

연체 기록은 어디까지 금융 밖으로 나갑니까

동의로 시작한 금융취약 정보 연계와 시행령 개정 예고를 구분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발표,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와 2026년 7월 입법예고 자료를 대조해 현재 쓰는 정보와 추가 예정 정보를 구분했습니다.

발행	2026.09.08	연번	2026_94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08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금융정보를 복지 발굴에 쓰는 목적과 그 정보가 넘어가는 법적 경로를 따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조사는 본인 동의를 거친 연계가 중심이고, 시행령 개정안은 정기 입수의 법적 근거를 넓히려는 단계입니다. 최종 규정에는 통지·오류정정·이의제기 절차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정부는 2026년 8월 복지사각지대 조사 대상 약 16만명 가운데 금융취약 징후 대상 약 1만6천명을 포함했습니다. 다만 취약채무자·불법사금융 피해 정보를 법정 입수 정보에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단계여서 이미 시행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16만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진행합니다.

전체 조사 대상	약 16만명	2026년 제4차 조사
금융취약 징후	약 1만6천명	전체의 약 10%
조사 기간	8월 24일~10월 16일	보건복지부
현재 법률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관계기관 자료 요청 근거
확대안	취약채무자·불법사금융 피해 정보 추가	시행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종료	2026년 8월 24일	공포·시행은 미확인

이번 조사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채무, 연체, 정책서민금융 거절 등 금융상 어려움의 징후가 있는 사람 약 1만6천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자체가 전화·방문으로 생활실태를 확인한 뒤 필요한 급여와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는 보장기관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둔다. 2026년 7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가진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 정보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지만, 9월 8일 현재 최종 공포·시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금융회사의 연체 기록이 자동으로 복지시스템에 전부 넘어가는 구조는 아니다. 법률이 자료 요청의 틀을 두고, 시행령이 입수할 정보의 종류와 기관을 구체화한다. 기존 시범 연계는 본인 동의를 거쳐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동의에 따른 일회성 연계와 시행령에 근거한 정기 입수는 통제 방식이 다르다. 전자는 동의 문구와 철회가 중요하고, 후자는 목적 제한·보유기간·통지·정정 절차가 중요하다.

복지 발굴 대상이라는 사실은 복지 급여 수급 자격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생활상태와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이번 조사 대상 약 16만명 중 금융취약 징후 대상은 약 1만6천명으로 약 10%다. 이는 전국의 모든 연체자 수나 실제 지원 인원과 같지 않다.

누가 어떤 금융정보 때문에 후보가 됐는지 개인별 분류기준, 오탐 건수, 정보 정정 건수와 최종 지원률은 발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금융취약 대상 비중	약 10%	1만6천명÷16만명
조사 기간	54일	8월 24일~10월 16일
법적 확대 상태	입법예고	공포·시행 미확인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입법예고안은 현행 규정이 아닙니다	의견수렴이 끝났어도 최종 문안의 공포와 시행 전에는 추가 정보의 정기 입수 근거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02 · 후보 선정 이유를 본인이 알 수 있는지 불명확합니다	어떤 정보가 발굴 신호가 됐는지 통지하는 공통 절차는 발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3 · 오류를 고치는 창구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금융정보 제공기관과 복지정보시스템 가운데 어디에 정정·이의를 신청할지 한 화면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04 · 발굴과 실제 지원 사이 결과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금융취약 후보 중 상담·급여·민간지원으로 이어진 비율을 평가할 통계가 필요합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지자체 연락을 받으면 어떤 정보와 기관 때문에 발굴 대상이 됐는지 묻습니다. · 사실과 다른 연체·채무 정보가 있다면 제공기관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합니다.
대상회사	· 동의 화면에 제공항목·받는 기관·이용목적·보유기간·철회방법을 나눠 표시합니다. · 오류정정 결과가 복지 발굴시스템에도 반영되는 연결 절차를 둡니다.
당국	· 시행령 최종안에 본인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마련합니다. · 정보 유형별 후보 수·오탐·접촉·실제 지원 결과를 비식별 통계로 공개합니다.

갈림길

최종 시행령에 통지와 이의제기가 함께 들어가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입법예고안은 정보 범위를 넓히지만 본인이 선정 이유를 알고 고치는 절차의 공개 기준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A 절차까지 함께 규정 복지 발굴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잘못된 금융정보 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B 정보 종류만 추가 연계 범위는 넓어지지만 본인은 왜 대상이 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

어디를 보면 아는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공포문과 보건복지부 후속 업무지침에서 통지·정정·이의제기 조항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2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리서치 다 갇아도 기록은 5년을 더 남는다 ↗

넥서스 리서치 정책서민금융의 거절 사유는 신청자에게 남지 않는다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5건

01	2차 · 2026년 제4차 조사 기간·16만명 규모·금융취약 징후 1만6천명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보건복지부 「금융 취약계층 등 복지위기가구 약 16만 명 대상 발굴조사」 (확인 2026.9.8) · 확인 2026-09-08 원문 열기 ↗
----	--

02	1차 ·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확인 2026.9.8) · 확인 2026-09-08 원문 열기 ↗
03	1차 · 취약채무자·불법사금융 피해 정보 추가 시행령안과 입법예고 기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15 (확인 2026.9.8) · 확인 2026-09-08 원문 열기 ↗
04	1차 · 2024년 금융·복지 연계의 본인 동의 방식 금융위원회,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2024.6.27 (확인 2026.9.8) · 확인 2026-09-08 원문 열기 ↗
05	파생 · 금융취약 대상의 전체 조사 대상 대비 비중 $1만6천명 \div 16만명 \times 100 = \text{약 } 10\%$ · 확인 2026-09-08
추적 예정	입법예고 뒤 공포된 시행령의 정보 항목과 시행일, 본인 통지·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원고의 정보 연계를 현행 동의 기반 절차와 시행령 개정 예정 사항으로 나누고, 입법예고 종료를 공포·시행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순서에 따라 제94호를 부여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책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정부·금융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개인의 복지 수급자격이나 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